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임의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
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의자의원)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단순 기상현상 관리체계에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법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해 관측·예측·제공·활용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단순 기상현상 관리체계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 심화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상기후와 같이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 또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1)에 따른 극한기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하여야 한다.
 1. ~ 2.(생략)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 또한 이상기후와 마찬가지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고려하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규정은 시행시기를 당초대로 2025년 10월 23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3).

나.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고려하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규정은 시행시기를 당초대로 2025년 10월 23일로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의3 중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로 한다.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 <u>이상기후</u> ”란 「 <u>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9호에 따른 <u>이상기후</u> 를 말한다.	1.1의2. (개정안과 같음)
<신설>	1의3. “ <u>극한기후</u> ”란 <u>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u> 을 말한다.	1의3. ----- --- 「 <u>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u>극한기후</u> 를----- -.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2. ~ 17.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
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후위기의 감
시·예측 등)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
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제3항
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
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
체계 구축 등의 시
책을 추진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관리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
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후위기의 감
시·예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후위기감시
예측관리체계, ---

-----.

⑤ -----
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 -----

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
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칙

-----.

다만,
법을 제20514호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은 2025년 10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상현상에”를 “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에”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을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u><신설></u>	1의3. “극한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u>기상현상에</u>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u>기상정보관리체계를</u>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 ----- ----- ----- <u>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에</u> ----- ----- ----- ----- <u>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u> -----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④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u>기상정보관리체계</u>,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ㅏ. ⑤ ----- <u>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u>, ----- ----- ----- ----- ----- -----.
---	---